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,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위반사항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 단서와 「건축법」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, 더 큰 감경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(안 제115조의4제1항 개정)

나.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(안 제115조의4제2항 개정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2. ~ 5. 3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”를 “단서와 아래 각 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큰 조항을 적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50”을 “75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5조의4(이행강제금의 감경)	제115조의4(이행강제금의 감경)
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단서와 아래 각 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큰 조항을 적용한다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: 100분의 50	1. ----- ----- 75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60